

「계약직원 취업 규칙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5. 4. 7. 개정 판 (시행 2025. 4. 1.) → 2025. 10. 13. 개정 판 (시행 2025. 10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04/compare?from=1677&to=169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4:49:04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채용 및 배치) ① 본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전형(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)에 합격한 자를 <u>직원</u> 으로 채용한다. ② 모집과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. ③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. <개정 2021-09-13>(시행 2021.10.1.부)	제7조(채용 및 배치) ① 본교는 <u>계약직원의 직무 특성에 따라 채용 전형을 달리 정할 수 있다</u> .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, 필기시험, 면접시험, 실기시험 등으로 구성하며, 직무별 채용전형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 또는 공고로 정한다. <개정 2025-10-13> ② 모집 및 채용은 <u>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</u> . 다만, 직무의 특수성이나 인력 수급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 또는 <u>경력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</u> . <개정 2025-10-13> ③ 비공개 채용 시에는 채용 사유 및 과정을 문서로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-09-13> ④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. <신설 2025-10-13>
제41조(배우자 출산휴가) ① 본교는 <u>직원</u> 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<u>유급 휴가</u> 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9-09-23> ②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. <개정 2019-09-23>	제41조(배우자 출산휴가) ①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며, 특별한 사항은 <u>직원인사위원회</u> 에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-09-23> ② 기타 구체적인 실행은 <u>근로기준법에 따른다</u> . <개정 2019-09-23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계약직원 취업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조(채용 및 배치) ① 본교는 계약직원의 직무 특성에 따라 채용 전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, 필기시험, 면접시험, 실기시험 등으로 구성하며, 직무별 채용전형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 또는 공고로 정한다.
- ② 모집 및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직무의 특수성이나 인력 수급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 또는 경력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.
- ③ 비공개 채용 시에는 채용 사유 및 과정을 문서로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.

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1조(배우자 출산휴가) ①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며, 특별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.
- ② 기타 구체적인 실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